

대구광역시 달성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

(김보경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6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

발의의원 : 김보경 의원,
신동윤 의원, 양은숙 의원

1. 제안이유

보도 점자블록의 노후화 및 부적정한 설치로 오히려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 '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'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점자블록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시각장애인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용어의 정의,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2~제3조)

나.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다. 실태조사 및 보도 점자블록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
3. 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비용추계서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(붙임)

대구광역시 달성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보도”란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.
2. “점자블록”이란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및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군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1.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

2. 보도 점자블록 유지보수 및 설치 계획
3.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「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」, 「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」 어느 하나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.

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 단체 또는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·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실태조사)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·관리의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.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) ① 군수는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을 제작할 때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「도로교통법(법률)」(2024.3.19. 일부개정, 2025.3.20. 시행)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0. “보도” (步道)란 연석선,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(유모차, 보행보조용 의자차,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·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.

□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(법률)」(2023.8.16. 일부개정, 2025.2.17. 시행)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7. “이동편의시설”이란 휠체어 탑승설비, 장애인용 승강기,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(步道),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,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.

□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보건복지부령)」(2023.12.11. 일부개정·시행)

제2조(편의시설의 세부기준) ①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·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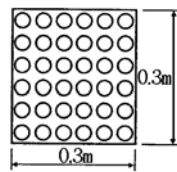
[별표 1]

16. 점자블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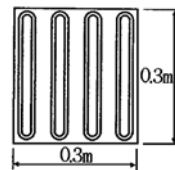
가. 규격 및 색상

(1)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.

- (2) 점자블록의 크기는 0.3미터×0.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,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.
- (3)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.
- (4)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·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, 돌출점의 높이는 0.6 ± 0.1 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.
- (5)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.
- (6)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, 돌출선의 높이는 0.5 ± 0.1 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.
- (7)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,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.



점형블록



선형블록

- (8)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,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나. 설치방법

- (1) 점형블록은 계단·장애이용 승강기·화장실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.3미터 전면, 선형블록이 시각·교차·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,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.
- (3) 점자블록은 매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건축물의 구조 또는 바닥재의 재질 등을 고려해볼 때 매립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부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」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, 달성군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·관리 실태조사,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제작 등에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(안 제4조~제6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(제3조제2항제2호)

3. 미첨부 사유

- 재정이 수반되는 안 제4조~제6조 모두 임의규정이며, 기본계획 수립의 범위에 따라 용역비용이 달라짐. 또한 대구광역시 관련 조례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아도 무방함(안 제4조)
- 실태조사 또한, 공간적 범위 설정 등 규모에 따라 예산 규모가 달라지므로,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우선시되어야 함(안 제5조)
-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의 경우 상위법령 및 지침의 범위에서 군에서 통일적으로 필요한 범위에 따라 표준안 제작의 비용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됨(안 제6조)

작성자

소속 및 직위

달성군의회 의원

성명(연락처)

김보경 (☎ 2052)